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1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 박용갑・이기헌・박정현

황정아 · 한민수 · 조승래

조인철 • 전용기 • 박희승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 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m²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해서 대부분 승차구매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승차구매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큼. 게다가 작은 연면적으로 인해 이용차량 수용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로의 교통악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법률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 (생 략)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	
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	
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	
다. <u><단서 신설></u>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u>정할 수 있다.</u>
③ ~ ⑨ (생 략)	③ ~ ⑨ (생 략)